

제439회 국회
(정기회)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9월8일(화)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20950)
4.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
- 위원장(김도읍) 인사 2
2. 간사 선임의 건 3
- 간사(주철현·김형동) 인사 3
3.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20950) 6
4.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6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7

(09시3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주철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 47조 2항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주철현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오늘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주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47조 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 5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제주시을 김한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중에서도 김도읍 위원님이 가장 위원장으로 적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선 중진 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 또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에서도 충분한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요한 대법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가장 적임이라고 생각해서 김도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주철현 김한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한규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도읍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장직무대행,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김도읍) 인사

(09시34분)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도읍입니다.

앞서 회의를 진행해 주신 주철현 위원님과 저를 추천해 주신 김한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를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 책임성, 준법성 등과 대법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를 검증·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인물이 해당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이들의 직무수행 결과는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 및 국민들의 권리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인 저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36분)

○위원장 김도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위원님과 국민의힘의 김형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철현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주철현·김형동) 인사

(09시38분)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선임되신 간사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주철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정신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가 이러한 자질과 책임의식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검증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과 김형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김형동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간사를 맡게 된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김도읍 위원장님 잘 모시고 주철현 간사님과 함께 우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근자에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독립, 대한민국에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청문회를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사법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식견과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청문위원으로서

또 간사로서 꼼꼼히 따져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사 선임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순서에 따라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인사말씀을 하셨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언 위원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박상언입니다.

인사청문의 취지에 따라서 대법관 김성수 후보자의 청문 실시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위원입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이 사회에 가지는 위치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서울 서대문을 김영호입니다.

청문회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나 또 국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될 점을 국민의 눈높이대로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용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대법관이 갖고 있는 헌법적 무게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현재 대법관 두 분이 공식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헌법기관인데, 이번만이 아니라 항상 미리 후보자에 대한 인청이 실시되고 공식 없이 퇴임과 동시에 바로 임명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대법관 공식으로 인해서 대법원 소부도 운영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대법관이 충원돼야 되

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면밀히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 선입견 없이 원칙에 따라서 잘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저희 노태약 전 대법관님 퇴임하신 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빠르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희 국회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성실하게 인사청문 과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지금 우리 대법원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 후보께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만한 분인지 적극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일할 때 우리 대법원의 문제 중의 하나로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들이 대법원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성수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대법원의 신뢰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법관 공백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승찬 위원님께서서는 공무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인사말씀은 다음 회의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류동하 전문위원입니다.

이 밖에도 입법조사관 등 여러 직원들이 우리 특위 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3.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20950)

4.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09시46분)

○위원장 김도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다음 날인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임명동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법관후보자 김성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1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기로 하였고 질의 순서는 여야 교대질의로 하되 교섭단체 내의 질의 순서는 위원님 성명의 가나다 역순으로 하고 간사 위원님들은 질의 순서 마지막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09시48분)

○위원장 김도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80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9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료 요구 목록을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좀……

○위원장 김도읍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이번 김성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법부 독립 훼손 시도와 또 후보자를 둘러싼 특권 의혹을 동시에 검증해야 하는 매우 엄중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상 입맛대로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의 핵심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료가 굉장히 충실해야 되는데 현재 김성수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를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인 자녀들의 수억 원대 주식, 예금 자산 형성 과정들이라든지 장인, 처남과의 불투명한 사적 채무 관계라든지 또 비정상적인 전대차 계약 등을 통한 고가의 강남 아파트 거주 사실 등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청문회가 제대로 된, 검증되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께서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합의해 주셔서 청문회가 원활하게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강민국 위원님 말씀대로 양당 간사님들께서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된 자료는 최대한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증인과 참고인 신문에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만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더더군다나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독립과 직결되기 때문에 증인 신청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증인을 불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성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처남이 제공하는 사실상 전전세 형태로 고가의 아파트에 낮은 금액을 주고 살면서 탈세 의혹이 구체적으로 불거졌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보면 김성수 후보자와 처남 사이의 말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는 당연히 말이 엇갈리고 또 기본적으로 탈세의 상대방인 처남에 대해서도 증인을 불러 봐야 우리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대법관은 국민들 모두의 삶에 영향도 미칠뿐더러 탈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탈세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자꾸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희 각 위원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증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더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현재까지 여야 간사 위원님 간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주진우 위원님께서 증인 요구가 있습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 요구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양당 간사님께서는…… 지금 주진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이 딱 한 분입니다. 협의를 해 보시고 합의가 된다면 따로 회의를 다시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인 출석 요구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잠깐……

○**위원장 김도읍** 주철현 간사님.

○**주철현 위원** 주진우 위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증인·참고인을 좀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사유는 김성수 대법관후보자의 처남과의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위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바로 대법관후보자인 만큼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질의하고 이미 제출됐거나 추가로 제출될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처남은 물론이고 처남이 일했던 전 직장 관계자나 심지어 평범한 일반 시민들인 현재 후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까지 출석시켜서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여당 간사로서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게다가 행정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19대 국회였던 2012년 이후에 지난 14년 동안 실시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출석시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 출석시켰던 2012년 인사청문회에서도 출석한 증인들은 태안 원유 유출 피해 어민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처럼 후보자의 재판 업무와 관련된 증인들이지 이번처럼 후보자 신상에 관한 경우는 아니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증인들은 그분들 스스로가 국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경우였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떠나서 헌정사에 실시된 모든 인사청문회를 살펴봐도 후보자의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출석한 것은 2010년 김황식 국무총리후보자 누이가 출석했던 단 한 번뿐이고 이번처럼 후보자도 아니고 배우자 형제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경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후보자 본인에게 질의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사안까지 일반 시민들을 불러서 전 국민 앞에 노출시키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욱이 이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가족과 일반 시민을 출석시킨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을 넘어서 가족과 평범한 주변인들까지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출석시킬 근거를 남기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께서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상정된 일정대로 의결해 주시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김형동 간사님.

○**김형동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는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재판관 이렇게 한 열 번 정도 청문위원으로 최근에 들어왔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낙마하셨지요, 이균용 대법원장—지금 대법원장 말고요—그때도 아마 처가 쪽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땠나라는 것을 굳이 김성수 대법관의 증인 신청 관련해서 너무 고려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 시선,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께서 왜 증인이 필요하냐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법관은 사법의 최후의 보루이자 법을 판단하는 분입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 사사로이 법을 위반했다면 국민들 누가 그 대법관의 준엄한, 준엄해야 할 그 판단을 존중하겠습니까? 지금 나온 기록만으로도 상당 부분, 탈세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염려됩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의 상대방이 친인척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확인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저희 청문위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쪼록 모두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많은 분들이 대법관·대법원에 대한 독립성 그리고 그 수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해소시켜 주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면 걸러 내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제출 그리고 증인 출석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증인 출석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그 가족의 집에서 잠시 사는 것에 대해서 월세를 얼마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 금액이 얼마냐, 그게 탈세냐 아니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증인 채택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을 얼마나 많이 불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의혹이 해명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판사로서 판사 행위를 하는 과정에 위법한 판결을 청탁을 받고 덮어 줬다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중차대한 범죄에 관련해서는 관련 증인들을 저희가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떻게 그래도 대법관후보자라고 하는 분의 일정한 고위공직자로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이런 수준까지, 충분히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것까지 증인을 요청해서…… 그것은 저는 자칫 잘못하면 모욕 주기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청문회를 열어서 자질과 능력과 여러 가지 인품이라든지 또 준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공정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명하신 간사님들 잘 협의하셔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증인·참고인 또 자료제출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관철되는 쪽으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실 말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전체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기 제3회의장에서 개최하여 대법관후보자 김성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민국 광상언 김도읍 김영호 김한규 김형동 박지혜 윤용근 주진우 주철현
채현일 최혁진

○청가 위원(1인)

부승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류동하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광상언 김영호 김한규 박지혜 부승찬 주철현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2026. 9. 3.
강민국 김도읍 김형동 윤용근 주진우	국민의힘	
최혁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의안 회부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2026. 8. 31. 대통령 제출)(의안번호 2220950)

9월 1일 회부됨

임시회의록